

03

구글, 이성과 선동의 광장 사이에서 - 구글·유튜브의 불법정보 유통과 삭제 문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20년 대한민국과 구글-유튜브

2020년을 기록하는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채워질 것이 틀림없다. 재난영화에서나 익숙하였던 갖가지 장면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등장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것과 공포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대유행이 발발하는 동안, 숨죽여 잘 보이지 않아 문제라 여기지 못하였던 우리 사회의 약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와 관계없다고 여겼던 ‘그들’만의 문제가 바로 내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처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의 무기는 불신의 조장이다. 마치 정교하게 준비된 심리전을 전개하듯, 곳곳에서 갈등과 혐오, 거짓을 불러 일으킨다. 싸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극단적으로 편 가르는 고도의 술책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편리와 발전을 동시에 향유하고 자랑하던 온라인의 ‘연결상태’를 통해 실행되며, 그 매개의 정점에 구글과 유튜브가 있다.¹⁾ 특히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공유하는 사람들 손을 거치는 동안 강한 신념의 근거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²⁾ 광복절 집회 이후 치솟았던 전국 확진자 수는 그것의 결집이 불러올 위험의 정도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척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의 ‘정보-신념-행동’구조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익숙함은 위험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정보를 만들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정보에 열광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수용자가 있으며 이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한, 구조적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는 플랫폼에서 신념화와 행동은 당연한 다음 단계일 수밖에 없다. 정보를 영상 매체에 쉽게 녹여 친절히 설명해주는 유튜브의 방식은 이용자의 접근성에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지만, 진실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공간에서 자정력이 발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정치권뿐 아니라 진보, 보수 성향을 막론

1) 플랫폼으로서의 구글, 유튜브가 직접 불신을 조장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에서 공론의 공간을 석권한 패자(霸者)의 숙명일 뿐이다.

2) 예를 들어, 동아사이언스, (2020. 8. 27). 국내 코로나19 유튜브 영상 37%가 가짜정보. UR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39055&memberNo=36236175&vType=VERTICAL>. 허위성 조작의 고의를 배제한 개념인 거짓정보(misinformation)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짜정보”가 모두 허위·조작정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실이 아닌 정보가 상당한 비중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음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다양한 언론에서 그간 꾸준히 지적하였던 문제이다.³⁾ 비단 허위·조작정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소위 '불법정보'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⁴⁾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들이 협찬 광고 표시를 소홀히 한 채, 마치 자신의 자발적인 제품 사용인 것처럼 내용을 포장하였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자연히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입법을 통한 규제라는 외부적 시정 노력도 뒤따랐다.⁵⁾ 하지만 법을 제정하여 구글과 유튜브를 정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신기루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법이 완벽히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들이 다루고 있는 정보의 규모가 너무도 크며, 규율을 위한 대상의 실체 또한 우리 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⁶⁾

더구나 온라인에 게시된 표현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별히 검열을 통제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은 방식이 바로 자율규제 혹은 공동규제이며 학계나 언론, 정책 실무에 걸쳐 규제 대안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다만,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불법정보의 위험을 억제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3) 수많은 기사 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성현 (2018. 10. 7). 유튜브 가짜뉴스 판치는데...손 목인 정부. <매일경제>. URL: <https://mk.co.kr/news/business/view/2018/10/624755/>

한겨레 (2018. 9. 28). 가짜뉴스 기지, 일베에서 유튜브로...20대가 가장 많이 본다.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635.html

정재림 (2018. 10. 5). 가짜뉴스 놓고 응징·보복, 난장판 된 유튜브.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040314>

차현아 (2020. 1. 28). 우한폐렴, 유튜브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전문가만 믿어야. <IT조선>. UR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2450.html

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5) 2017년 4월부터 9월 사이,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게시자에 대한 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조치 등 책임을 규정한 법률안이 집중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모두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6)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국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분석한 글로 최진웅 (2017).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322. 참조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성을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한다.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로 작용하는 사태도 막아야 한다. 자유를 제한받는 이들과 위험을 벗어 나려는 이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이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의 불법정보 대응 방식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공유하는 영상 시스템에 광고 수익 구조를 결합하면서, 이용자의 정보 유통과 습득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한 전통적 언론의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정보를 보유한 언론의 일방적 소통구조가 낳을 수 있는 권력적 속성을 교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의 위치에서 비판하고 검증한 결과를 다시 공유할 수 있다면, 기성 언론도 스스로 진실 추구를 향한 또 한 번의 기회를 확보하는 셈이다. 언론과 플랫폼이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이상적 구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동적·선정적 언어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가 주목받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독자 수가 광고수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그들이 열광하는 주장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다. 허위·조작정보가 동원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객관적 정보습득을 통한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 공간에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극단주의가 발원하고 활동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대목이다.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이 때로는 스스로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이 되어 오프라인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기성 언론의 활동으로부터는 쉽사리 생기지 않는 현상이다.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이 받아 쓰고 뜻을 같이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언론과 플랫폼이 동시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일 것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구글-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심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 다음,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과 달리 초국적 기업인 구글-유튜브에 행하는 처분에는 대상의 자발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 등의 경우, 그 처리를 두고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정부에 반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가 구글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직접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합의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조치(mode-ration)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⁷⁾ 플랫폼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다수 이용자가 선호하는 견해, 대중이 원하는 콘텐츠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리라는 의심은 꽤

7) 홍남희는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및 차단, 이용자 계정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를 “모더레이션”이라 번역하면서, 이것이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 업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홍남희 (2018).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pp. 138-140.

합리적이다. 아무리 거대하고 폭넓은 이용자가 활동하고 있더라도, 사적 플랫폼 기업에 완전한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양성의 가치는 민주국가의 핵심적 전제이지만,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이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의 광장으로 존속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글을 비롯한 사업자가 이러한 한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초국적 거대기업인 구글은 이미 이러한 요청을 알고 있을 것이다. 스노든(Edward Snowden)사태 이후 2013년부터 플랫폼의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였고, 2017년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전면적 개편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⁸⁾ 이렇듯 구글이 투명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온라인 불법정보의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지키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글로벌 인터넷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안전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의 제고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배후의 목적이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공적 책무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투명성 확대의 전제에서 실행하는 불법정보 단속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자칫 국가 검열보다 더 강화된 사적 검열 또는 불공정 검열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불법정보 없는 건강한 플랫폼’의 신화

우리는 안전한 플랫폼을 원한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에 쉽게 접근하여 습득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한다. 많은 이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을 가지고 싶어한다. 부와 힘이 없는 사람도 오직 생각만으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평등한 장소이면 더욱 좋겠다. 뉴스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는 포털을 원한다. 미성년자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가 검색되지 않는 정보의 창고를 원한다.

누구나 이렇듯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꿈꾸겠지만, 이는 어쩌면 결코 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할지 모른다. 오히려 말썽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시끄럽게 북적대는 광장이 걸맞은 비유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너무 높은 도덕적

8) Google 투명성 보고서 참고 URL: <http://transparencyreport.google.com/about?hl=ko>. 주요 개편 내용으로 잊힐 권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광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선거 공정성 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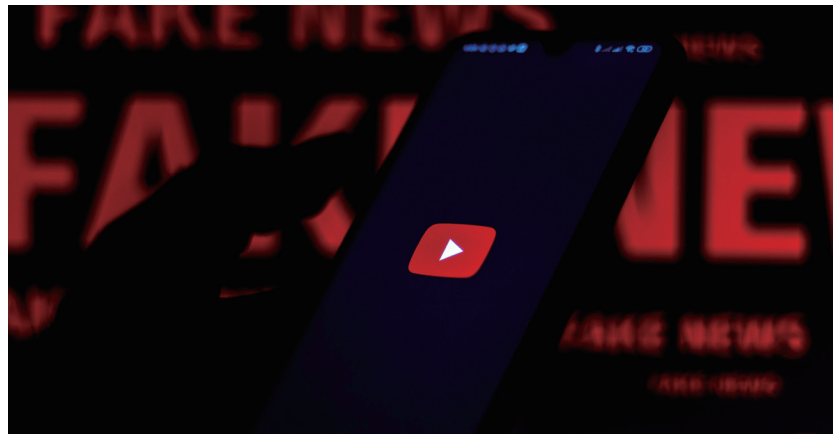
짓대로 재단할 경우 자칫 법적 가부장주의(paternalism)로 발현될 수 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폭력이다. 플랫폼의 불법정보를 단속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착해 보이지만 폭력적이다. 폭력적 요소를 순화시키면서 정당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무형의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선택지가 검열이다. 그 주체가 국가이든 개별 플랫폼이든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을 바라보는 형식적 법치의 환상을 깨야 한다. 온라인은 법으로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 오히려 이용자나 참여자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여 플랫폼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당장 퇴출하여야 하는 불법정보는 플랫폼 이용자의 민주적 참여를 좌절시키는 극단적 콘텐츠가 우선이어야 한다. 사회로부터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려는 혐오의 표현, 타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는 독선적 의견, 그리고 이들의 논지를 억지로 성립하게 할 의도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그들이다. 온라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결과가 오프라인에도 드러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유튜브의 소위 4R전략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평가해 볼 만 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는 최대한 빨리 삭제(Remove)하고, 공적 신뢰를 보유한 콘텐츠는 더욱 부각(Raise)하며,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 확산을 억제(Reduce)하고, 신뢰할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보상(Reward)한다는 것이다.⁹⁾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밀한 콘텐츠 관리자 정책을 수립하였다.¹⁰⁾ 첫째, 채널 책임성 정책이다. 정책 요구 사항을 계량화하여, 90일 동안 채널 폐쇄, 정지 또는 수익 창출 중지 등의 원인이 되는 악용사례를 30건 미만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90일 내에 정책을 1회 위반할 경우 채널을 한 달 동안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채널 영입 정책이다. 콘텐츠 관리자가 부정한 수단을 통해 크리에이터를 영입하지 않도록, 채널 연결 초대에 대한 수락률을 매달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패할 경우 1개월 동안 채널 초대를 제한하였다. 셋째, 시스템 우회 관련 정책이다. 콘텐츠 관리자가 유튜브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정책을 우회하거나 방해

9) 유튜브 공식 블로그 참고 URL: <http://blog.youtube/inside-youtube/the-four-rs-of-responsibility-remove/>

10) 이하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 관리자 정책 참고 URL: <http://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142671?hl=k0>



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전체 콘텐츠의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넷째, 저작권 위반 경고 정책이다. 관리하는 모든 채널을 합하여 90일 동안 저작권 위반 경고를 10회 받으면 추가 심의를 받게 되고, 채널 연결 중지, 동영상 업로드 중지 및 파트너 관계 계약 해지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액세스 및 인수 정책이다. 비제휴 또는 금지된 제3자에게 보상이나 다른 대가를 받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대여, 임대, 판매 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유튜브의 4R정책은 소위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강한 책임을 원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양새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상존하는 플랫폼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적 규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상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삭제요청과 2017년 발효된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상 플랫폼의 불법정보 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삭제 건수를 대폭 늘려야 했던 영향이 크다.¹¹⁾ 후자의 규율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수준으로 보편화하고 매우 상세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다.¹²⁾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이드라인을 스캠 및 현혹행위, 민감한 콘텐

11) 2017년 제정된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에 의하면, 2백만 명 이상의 등록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 사업체를 대상으로 형법전에 규정된 특정 범죄행위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 수리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후 삭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권일 (2019),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 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참조

12)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참고 URL: <http://youtube.com/howyoutubeworks/policies/community-guidelines/#community-guidelines>

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상품의 네 범주로 나누었다. '스팸 및 현혹행위' 항목에 허위참여, 명의도용, 콘텐츠에 포함된 링크, 스팸·현혹행위·사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민감한 콘텐츠' 범주는 아동보호, 맞춤 및 미리보기 이미지, 과도한 노출 및 성적 콘텐츠, 자살 및 자해행위 등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항목에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심 표현, 폭력범죄조직,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상품' 영역에는 총기류가 등장하는 콘텐츠, 불법 또는 규제상품 판매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유튜브에는 현재 1분에 약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상이 게시된다고 한다. 물리적으로 구글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모두 살펴보고 불법정보를 판단하여 삭제할 수는 없다. 결국 심의 인력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활동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남희가 소개하는 구글의 삭제 심의 과정의 현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¹³⁾ 심의 인력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들의 저렴한 외주작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 콘텐츠 시청자들의 신고(flag) 제도에 의한 삭제조치는 다수의 횡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의 취향을 거스르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글의 유력한 대안은 이 모든 문제를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설계하여 실행하는 방식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발전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반드시 사적 검열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의 플랫폼이 의사소통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검열과 삭제는 정부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헌법위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¹⁴⁾ 그것을 행할 정당성도 부족할뿐더러, 행하는 방식 또한 기본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1차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음의 목표는 법 위반을 피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플랫폼의 사적 검열을 순수한 사적 자치로 정의하여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허위·조작정보

13) 앞의 홍남희 (2018).

14) 사적 검열이 최소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적 검열의 순수성, 자발성,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황성기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성기 (2011),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3호, pp. 174-176.

의 해악을 줄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플랫폼의 사적 검열이 초래하는 위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플랫폼의 공적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여야 한다. 그 공간은 개인 권리 향유의 사적 장소인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장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공개의 민주화

공론장은 공정한 규칙이 지배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가 만연한 공론장에서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질 수 없다. 가짜뉴스에의 단호한 대응은 공정성의 테제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공정한 공간에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꽃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공론장은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이다. 허위·조작정보가 어떤 원칙에서 삭제되는지, 플랫폼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원칙에서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제 그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공론장에 정주하는 우리는 이들 문제의 답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매우 알고 싶다.

플랫폼이 공론장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가지는 정보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알려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른다. 알지 못하는 참여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정보량이 움직이는 플랫폼의 사정을 이해한다.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해명도 믿고 싶다. 하지만 공론장인 플랫폼은 그 화려한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둡다. 더 밝고 투명한 환경이 필요하다. 투명성 보고서가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더 자세히 공개해주시기를 요청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알고리즘이 곧 우리 민주주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어느 전직 플랫폼 창업자의 솔직한 일갈이 떠오른다. “AI는 중립적이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기술 발전에 희망을 걸고 싶다. 기계의 힘이라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인공지능이 언젠가 탄생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 중립성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 민주적 공개만이 유일한 대책일 뿐이다. 